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9. 12 선고 2024가합1023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이윤석, 장준동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275,497,3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5,497,3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2019.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551,455,08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1,455,0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D코인 투자금 수신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을 기획한 후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D코인의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원고 및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망 C과 이러한 행위를 공모한 G, H, I은 2016. 9. 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원고 및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G, H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49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9노1271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408 판결, I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19고합562, 2020고합493(병합), 2021고합263(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노121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 본인 및 배우자 J 등 명의로 D코인에 합계 1,236,3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F 등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17. 6. 20. D코인에 합계 45,5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는 F 등에게 이들이 투자한 돈을 상환하여 준 다음 2019. 8. 1. F 등이 망 C 등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9. 8. 2. 망 C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342), 망 C은 위 소송 중이던 2022. 8. 6. 사망하였고, 망 C을 한정상속한 K이 망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사건에서 ‘망 C의 소송수계인 K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G, H, I과 공동하여 1,219,311,627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중 망 C의 소송수계인 K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 C과 피고는 2019.경 부산가정법원 2018호협751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을 통하여 2019. 2. 12. 협의이혼하였고, 2019. 2. 25.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2. 15.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망 C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하면서 피고에게 망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인 551,455,085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망 C과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있었던 2019. 2. 15. 당시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1,219,311,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망 C의 무자력 여부

먼저,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이 2015. 9. 1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L 등으로부터 'M(N코인)' 등에 관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255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노868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망 C은 원고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원금만 보더라도 합계 28,143,164,109원(= 이 사건 제1 형사판결 관련 24,720,031,659원 + 이 사건 제2 형사판결 관련 3,423,132,45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라 한다)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47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망 C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재산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O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망 C과 피고의 실질적인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망 C과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305,994,669원(= 475,000,000원 - 169,005,331원)이다.

① 망 C의 적극재산: 시가 47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② 망 C의 소극재산: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169,005,331원(= 80,000,000원 + 89,005,331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③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없음

(2)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망 C과 피고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와 망 C은 2명의 자녀를 두고 약 36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는 혼인생활 내내 부부 공동재산은 피고의 소득으로 유지·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와 망 C의 기여 정도, 그밖에 피고와 망 C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망 C의 적정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초과부분의 계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의 합계액이 305,994,669원이므로 피고에게 분할되어야 하는 재산가액은 152,997,334원(= 305,994,669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고, 2023. 1. 16.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8,000만 원 등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망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부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피고에게 분할된 재산가액은 305,994,669원(= 475,000,000원 - 169,005,331원)으로, 152,997,335원(= 305,994,669원 - 152,997,334원)이 더 분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당한 재산분할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즉 1/2

지분(= 152,997,335원 ÷ 305,994,669원)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사해의사와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C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한 이 사건 제2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망 C로서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채무 초과상태가 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망 C의 관계, 이 사건 아파트는 망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피고와 망 C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이 사건 제2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도 망 C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P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인 2024. 5. 7.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2.경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같은 단지 아파트의 일반 평균매매가는 7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2024. 2.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변동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 또한 2024. 2.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2024. 2.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시가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P은행 명의 각 근저당권의 2019. 2. 11.경 기준 피담보채권액이 169,005,331원(= 80,000,000원 + 89,005,3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720,000,000원에서 P은행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위 169,005,331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994,669원이 이 사건 아파트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1/2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275,497,334원[= (720,000,000원 - 169,005,331원) ×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액수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위 275,497,334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망 C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위 275,497,33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5,497,3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주미소, 판사 정수호

별지

- 1) 본인 투자금 1,236,300,000원 + F 등 투자금 45,500,000원 - 회수한 이익금 62,488,373원
- 2)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